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4 민 사 부

판 결

| | |
|-----------|---|
| 사 건 | 2010나20478 손해배상(기) |
| 원고, 항소인 | 안○○ (44년생, 여자) 시흥시 송달장소 시흥시 |
| 피고, 피항소인 | 정○○ (59년생, 여자) 시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○○ |
| 제 1 심 판 결 |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. 6. 23. 선고 2009가소129345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10. 9. 28. |
| 판 결 선 고 | 2010. 10. 19. |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(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)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9,292,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7. 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의 아들인 권○○(당시 17세)은 2007. 8. 29. 21:05경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원고를 충격해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우측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(척골 및 요골 원위부)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
나. 원고는 위 권○○의 부모인 권○철과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00000호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29,896,018원(기왕치료비 1,956,018원, 교통비 940,000원, 휴업손해 12,000,000원, 후유장애와 일실수입 12,000,000원, 위자료 3,000,000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(이하 '종전소송'이라 한다)를 제기하였고, 위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9. 7. 3. '피고와 권○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. 7. 31.까지 10,000,000원을 지급한다. 만일 피고, 권○철이 위 일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09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'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(이하 '이 사건 결정'이라 한다)을 하였는데, 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9. 7. 24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요추부 염좌, 제12흉추 압박골절, 우측 요골 및 척골

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제6호증, 제8 내지 11호증, 을 제1, 2, 5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결정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부 염좌, 제12흉추 압박골절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휴업손해 11,119,162원, 기왕치료비 2,626,669원, 교통비 830,000원, 위자료 5,000,000원 합계 19,575,831원 중 19,292,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(1) 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).

또한 신체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소송물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(일실수입 등), 적극적 재산상 손해(치료비 등), 정신적 손해(위자료)로 구분되고, 피해자가 전 소송에서 위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해당 항목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

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새로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위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.

(2) 따라서 원고가 종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하는 요추부 염좌,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, 갑 제2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,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손목 부위의 골절상을 입고 이에 대하여 종전소송을 제기한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일인 2009. 7. 24. 이후인 2009. 7. 26.경부터 요추부 염좌,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을 제4호증의 5,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동서외과의원장, 이○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.경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요통 등으로 이○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, 원고가 종전소송 진행 중 제출한 2008. 9. 9.자 준비서면에서 "원고는 사고 충격 당시 골절상의 통증으로 미처 느끼지 못했던 허리 통증증상이 그 후 서서히 나타나 지금은 걷다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바", "사고 당시의 충격과 심한 고통 그 후 손목 저림에 허리 통증까지 더한 증상이 계속되어"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 스스로 제1심 소송에서 제출한 2010. 4. 27.자 준비서면 이래로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후 2008. 11. 24.부터 병원에 가서 등 상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종전소송 당시 원고 주장의 요추부 염좌,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의

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백강진 _____

 판사 황운서 _____

 판사 민희진 _____